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 외 10명
- 나. 의안번호 : 제 1986 호
- 다. 발의일자 : 2024. 8. 12.
- 라. 회부일자 : 2024. 8. 14.

2. 제안이유

-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재난과 복합재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 다.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시장으로 하여금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고 대응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 대응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 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함(안 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 타 : 입법예고(2024. 8. 20.~8. 2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 요

- 본 제정안은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제정안 주요 내용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복합재난”에 대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 - 복합재난 :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제3조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해야 함.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함.
제5조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각종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제6조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해야 함. • 복합재난 대응 지침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보완 및 개선 가능함.
제7조 (심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제8조 (시행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 2019년 8월에 확정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년-2024년)’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중 기술적 측면에 있어 복잡화된 기술과 시설들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결합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초대형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음이 소개되고 있고,
- 또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4대 전략, 17개 중점 추진 과제)의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 중 중점 추진과제로 ‘대형 복합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 확보’를 설정한 바도 있음.

[표] 2019년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기본 방향

4대 전략 및 17개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포용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 ■ 국민 참여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 국민 안전권 보장기반 마련 ■ 안전관리계획의 실행력 제고
전략 2. 예방적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미세먼지 감축 및 먹는 물 수질관리 ■ 생활주변 안전환경 조성 ■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전략 3. 현장중심 재난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체계 혁신 ■ 육상·해상 현장대응역량 강화 ■ 지자체·민간 재난관리역량 확대 ■ 재난현장의 정보·소통체계 개선
전략 4.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첨단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 대형 복합재난으로부터 회복력 확보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대규모 재난 관리역량 강화 ■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본 용역은 기존 재난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복합재난 관리체계의 개념 정립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정도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었으나,

□ 2019년 복합재난 학술용역 기추진 사항

- 용역명 : 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과업기간 : '19.10. ~ '20.3. (총 5개월)
- 용역비 : 48백만원 (재난관리기금)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석민 연구위원)

○ 연구성과

- 1) 법·제도·조직체계 등 국내 재난관리체계 분석
- 2) 국내외 복합재난 사례 및 대응체계 분석
- 3) 복합재난 관리체계 개선방향
 -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능(안) : 재난예측 및 시나리오 개발 등
 - 안전총괄실 조직개편(안) 제안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대응절차 개선(안)

- 이후 2023년, 2024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에서 신종·복합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한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 2024년 현재는 “신종·복합재난 파급효과 분석 및 전개 시나리오 개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주된 과업내용은 신종·복합재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에 해당하며 추후 용역 성과물은 재난대응 훈련에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2024년 신종·복합재난 관련 학술용역 추진

- 용역명 : 신종·복합재난 파급효과 분석 및 전개 시나리오 개발 용역
- 과업기간 : '24.6. ~ '25.3. (총 10개월)
- 용역비 : 17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 수행기관 : 충북대학교 (연구책임자 : 이승수 교수), (주)큐버솔루션
- 사업내용 : 신종·복합재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
- 활용계획 : '24.9~ **재난대응 훈련에 적용**(재난전개 시나리오 등 성과물 활용)

구분	1차	2차	3차	4차
신종·복합 재난유형	지하차도(터널) 화재 확산	초고층건물 전기차 화재	복합산사태 대규모 통신마비	한강 수난사고
재난대응 훈련일정(안)	'24 하반기	'24 하반기	'25년 중	'25년 중

- 이를 종합할 때 서울시는 복합재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종·복합재난 대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따라서, 동 제정안을 통해 복합재난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응 지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복합재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빠르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재난”과 “복합재난”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먼저, 안 제2조제1호에서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법 상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며,

-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리고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에서 “복합재난”은 상기와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 복합재난에 대해 아직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자료¹⁾에 따르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회 각 영역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재난의 연쇄적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재난규모, 피해정도, 자연재해-사회재난 분야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고, 재난의 ‘상호의존성’, ‘연쇄성’, ‘동시성’ 등의 특징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서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할 것임.

1) “대형복합재난 법적기반 구축 연구(2015)”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는 한편,
-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는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시 예산 투입이 가능토록 소요예산 확보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

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재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개별 재난에 관한 사항이 기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동 제정안의 ‘복합재난’에 관한 사항과 중복 또는 충돌로 인한 혼선 또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본 제정안은 기존 개별 재난에 관한 개별 법령이나 조례의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이해됨.
- 또한, 추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될 경우 개별 재난과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4)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과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항과 관련하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²⁾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9조³⁾에 따라

2)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2024. 1. 16.>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4. 1. 16.>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3)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

‘재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동 제정안에서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격년 주기로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 이는 개별 재난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복합재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및 분석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앞선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에서와 같이 체계상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지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제2항에 따른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은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복합재난에 대하여 자료 수집·분석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 및 실행하는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 특별히,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훈련에 관한 사항까지 수립토록 하는 것은 발생가능한 재난들 간 조합이 많고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 여겨짐.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 1. 4., 2023.3.2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2023.3.27.>

[본조신설 2015. 5. 14.]

5)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복합재난 대응 지침 작성·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포함사항과 보완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 지침 포함사항은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 서울시 재난유형별(자연재난 10종, 사회재난 50종) 위기관리 매뉴얼이 공통적으로 재난대응 절차, 임무, 단계별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 이들 개별 재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달라지는 상황과 피해양상 등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예상하여 대응과 복구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지침화함으로써 복합재난 발생 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심의·자문(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4)에 따른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제4조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제5조의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이는 이 조례안에 따라 격년 단위로 수립하는 안 제5조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안 제6조의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전문성과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 4)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4., 2024.7.15.>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신설 2023.10.4.>
- [전문개정 2015. 5. 14.]

■ 종합의견

-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재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제정안은 개별 재난의 다양한 조합 중 발생가능성이 높은 복합재난을 선별하고 그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예상 전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 지침을 작성·운용토록 함으로써,
- 서울시민이 복합재난으로부터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음.
-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있어 현행 개별 재난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조례와의 충돌됨이 없도록 이들 개별 재난 관련 규정에 보완적 측면에서 안전관리계획과 대응 지침이 작성·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